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 . . . (제 회)	

**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일부개정령안**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(법률 제19986호, 2024. 1. 9 공포)에 따라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사업구역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고, 해당 기능을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의 택시정책위원회로 통합·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택시정책위원회의 정비(안 제2조제1항,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) 등
- 1) 위원회 구성에 광역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, 위원회를 비상설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함
  - 2)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함

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  
 2) 입법예고(2024. 3. 29. ~ 5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  
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 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#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2조의 제목“(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”을“(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택시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택시정책위원회”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 
 원을 포함한다)
  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  
 라 한다)에서 택시운송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
 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
  3.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 
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
  5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 
 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법 제5조5항에 따라 위

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진의 제2조의2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해임 또는 해촉”으로 하며,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

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 제7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, 결과 통보 및 직접 처분

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1.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</p> <p>2.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3.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	<p>제2조(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 -- 택시정책위원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</p> <p>4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에서 택시운송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</p> <p>3.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</p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신 설>

우
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해촉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2조의3(위원의 해촉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해임 또는 해촉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[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시·도지사는 제외한다]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~ ④ (생략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757